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. 12. 21 선고 2022가단384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2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목포시 C 대 489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

나. 위 가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

다. 2021. 10. 29.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2021. 10. 29. 목포시 C 대 489㎡ 중 피고 명의 1/2 지분을 취득하였는데,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, 피고를 상대로 무허가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와 함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하상익